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시행)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업종이 입지 가능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조건사항에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준 준수사항에 업종 추가

1) 조쇄 및 분쇄 공정에 관련 업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하여 벽면・지붕 구조물을 설치하게 함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시행규칙 별표 14 제6호 개정)

2) 살수시설을 적정 운영하게 하도록 하고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을 의무화함(안 비고2 신설)

3) 시행에 관한 적용례를 시행일 이후 최초 신고사업부터 적용(안 적용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6호 중 “제조업만 해당하며,”를 “제조업과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만 해당하며, 시멘트 제조업의”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파쇄·분쇄시설(이 규칙 별표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습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물 분사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을 부착·운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6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과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만 해당하며, 시멘트 제조업의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비고 :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비고 1.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파쇄・분쇄시설(이 규칙 별표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습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물 분사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을 부착・운영해야 한다.